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신청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6. 23.

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장



- 건 명 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신청취소처분 사전통지
- 근 거 :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제12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 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 불능 사유
	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박○범	2002. 12. 3.	경기 용인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55-10 (이하 생략)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신청 취소처리 사전통지서	필수 초기대면 상담일에 미방문 (출석통지 2회 이상 불응 및 연락두절 등)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신청취소처분	폐문부재 등

- 공고기간 : 2026. 6. 23. - 2026. 7. 6. (14일간)
- 기타 사항은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 국민취업지원과 권선진(Tel. 031-231-7922)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